
긴급토론

새 정부 이주여성인권 정책을 묻다

일시 | 2022년 4월 20일 수요일 오전 10:30-12:30

장소 | 여성플라자 시청각실

주관 | 이주여성인권포럼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주최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인권센터,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아시아의 창, 아시아 평화향한이주 MAP, 안산다섬연합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주한몽골여성총연맹, 충남다문화가정협회, 충남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기관네트워크,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이주인권센터

새 정부 이주여성인권 정책을 묻다

사회_김현미(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인사말	석원정(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기조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주여성 인권정책 검토 허오영숙(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과 공존하는 이주여성 정책과제 김민정(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 이주여성 입장에서 본 이주정책의 방향 원옥금(이주민센터 동행) 난민여성과 아동인권을 위한 정부정책 방향 제안 박정형(한국이주인권센터) 지역사회 관점에서 이주민의 현실과 사회통합 이영아(아시아의 창) 글로벌 관점에서 본 새 정부 이주정책의 방향 김철호(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종합토론	참여자들과 함께

• 기조발제		
이주여성 인권정책 검토 / 허오영숙(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1 -
• 토론1		
인권과 공존하는 이주여성 정책과제 / 김민정(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		- 17 -
• 토론2		
이주여성 입장에서 본 이주정책의 방향 / 원옥금(이주민센터 동행)		- 27 -
• 토론3		
난민여성과 아동인권을 위한 정부정책 방향 제안 / 박정형(한국이주인권센터)		- 33 -
• 토론4		
지역사회 관점에서 이주민의 현실과 사회통합 / 이영아(아시아의 창)		- 39 -
• 토론5		
글로벌 관점에서 본 새 정부 이주정책의 방향 / 김철효(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45 -

이주여성 인권정책 검토

허오영숙(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여성인권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허오명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1

주요 내용

- 여성가족부 존폐 논란속에 그동안 이주여성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그 한계와 향후 방향을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 정책 중심으로 살펴 봄
- 이주 과정, 정착과 사회통합, 귀환의 틀에서 젠더와 인권 관점의 이주여성 정책이 필요했음에도 이주여성 정책은 저출산 대책으로 대상화된 이주여성을 상상하였음. 이에 따라 새로운 시민으로 등장한 이주여성의 다층적 역동성을 고려한 정책이 부재하였으며, 한국 혈통 중심의 다문화가족 중심의 정책으로 일관하여 다양한 체류 형태의 이주여성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짐
- 정책 기초의 한계에도 여성인권 관점을 수용한 여가부의 존재로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체계 마련, 결혼이주여성들의 다양한 사회 진출의 토대가 되었음
- 새 정부는 다문화가족 자녀 중심의 공약에서 벗어나 이주여성의 다양성에 주목하고 인권과 성평등 관점의 정책을 여성가족부 이주여성 정책 강화를 통해 실현하여야 함

2

이주여성 관련 정책 흐름

년도	관련 제도
1997	국적법 개정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국적 부여 폐지, 남녀 모두 일정 요건 갖춘 후 귀화 허가)
2002	한국남성과 외국여성 국제결혼 연간 1만건 이상 증가 시작
2004	이주여성쉼터 시범 지원
2005	여성부,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사업
2006	'여성 결혼이민자 및 혼혈인-이주자 사회통합 지원 정책' 국정과제로 발표
2006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설립 (2014년 다누리콜센터 1577-1366과 통합)
2006	결혼이민자지원센터 시범사업 (현 가족센터(208), 다문화가족지원센터(23))
2007	결혼중개업 관리법 제정
2007	결혼이민자를 위한 현지 사전 정보 제공 프로그램 시작
2008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2008	광역지자체별 이주여성쉼터 인가로 이주여성쉼터 확대 (현 28개소)
2019	이주여성 상담소 신규 설치 시작 (현 9개소)
2021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2023년 시행)

3

이주여성 관련 정부 정책 출발부터 비판에 직면

'여성 결혼이민자 및 혼혈인-이주자 사회통합 지원 정책' (2006) 국정과제 발표에 대한 비판

- ① 결혼이민자 지원 정책의 배경이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
- ②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 ③ 결혼이민자 지원 정책이 아니라 가족지원 대책으로 가족 유지가 핵심

이주여성 10대 인권 과제 제시

- ① 가족주의적 결혼이민자 지원 정책을 지양하고, 결혼이주자 인권 지향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 ② 결혼이주자가 세력화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 ③ 입국 전 결혼이주자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 기회가 주어져야
- ④ 결혼비자 발급 전 인터뷰 제도 및 초청자 심사 등을 통해 결혼이주자 인권을 보호해야
- ⑤ 불법적 인권침해적 국제결혼 중개행위를 근절할 강력한 처벌법을 제정해야
- ⑥ 결혼 중개업체나 중개인에 피해를 입은 여성은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해 정착과 재합을 위한 기회 제공해야
- ⑦ 성차별적 인종차별적 국제결혼 광고 행위에 대한 단속 처벌을 강화해야
- ⑧ 혼인 파탄 귀책사유 입증에 어려운 경우, 현장실태 조사 강화되어야
- ⑨ 이주민 관련 관계 공무원 및 관현 종사자들에게 인권 및 다문화 감수성 향상 교육 강화해야
- ⑩ 결혼이주자를 포함해 이주로 인해 발생하는 인신매매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2006.6.12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 정책 다시 보기 토론회)

출처: 한국여성민우회(2017). 우리 모두는 이방인이다: 사례로 보는 이주여성인권운동 15년

4

여가부 주요 이주여성 정책

- 현지사전정보제공 (PDO)
- 다문화 가족 생활 지원(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콜센터1577-1366 운영)
-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전국 29개소)· 상담소(전국9개소) 운영
- 결혼중개업 관리

5

이주여성 관련 여성가족부 전달 체계

구분	생활 지원				위기 지원		
	현지사전정보제공 (PDO)	다누리콜센터 1577-1366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재단	쉼터 (보호시설)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
					이주여성쉼터	성매매 피해 쉼터	
주요 기능	결혼이민예정자 대상 한국생활 기본 정보 제공 및 상담	다문화가족 종합 정보 전화센터로 24시간 13개 다국어 상담 통역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교육 상담 문화 프로그램	북한이탈 농도입국 중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응 지원	여성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중반아동 지원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 지원	여성폭력 피해 이주여성 상담 지원
근거 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	가정폭력방지법 성폭력방지법	성매매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
규모	베트남, 필리핀, 태국 (2001)	중앙센터 및 6개 지역 센터	가족센터 208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8개소	재단 1개소 레인보우스쿨 20개소	28개소	1개소	9개소
운영 기관	유엔인권정책센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재단	개별 운영 법인	두레방	개별 운영 기관
관련 부서	다문화가족 지원과	다문화가족 지원과	다문화가족 지원과	학교밖청소년 지원과	권익보호과	권익기반과	권익보호과

* 다누리콜센터 1577-1366은 위기 지원 성격을 포함하고 있음

6

여가부 이주여성 정책의 성과와 한계

- 성과:
 - 현지사전정보 제공으로 입국 초기 이주여성들의 기초 정보 파악에 도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같은 물적 토대를 통해 이주여성들이 공동체 경험, 일자리, 다양한 사회적 진출을 시도하는 바탕.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공식 지원 체계에 포함
- 한계:
 - 한국 남성과 가족을 이룬 이주여성으로서 아내,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적응 지원이 주요 사업이며, 성·인종차별적 종개업에 대한 인식매매적 속성을 그대로 둔 채 공식화함. 이주여성이 시민으로서 등장하면서 갖게 되는 역동성·다양성·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적 질문을 수행할 존재로서 상상력 부재

7

체류 정책의 가부장성

- 배우자 조력이 필요한 체류, 귀화 과정으로 한국인 배우자에게 종속
- 결혼이민(F6)비자를 혼인상태, 배우자 동거 여부, 자녀 유무 등에 따라 세분류 하여 그 자체로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음.
- 결혼이민 비자 세분류에 따라 귀화 과정을 달리하여 소위 '정상가족'을 유지하지 않(못)는 이주여성에게 더 어려운 과정을 거치도록 정책 설계 (복수국적 부여, 귀화필기 시험)
- 이주여성에게 한국의 가부장적 가족 문화에 동화할 것을 체류, 귀화 정책을 통해 통제하는 방식

8

이주여성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해: 1)UN의 권고

- UN은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사회권 위원회 등 다양한 위원회에 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이주여성 관련한 권고
- 권고의 주요 내용 :
 - ① 배우자 조력, 귀책 사유 유무 등 사유와 관계없이 결혼이주여성의 체류권 보장
 - ② 결혼이주여성의 사회보장권 ③ 이주여성이 자신의 권리 인지하도록 인식 개선 노력
 - ④ 결혼 중개업에 대한 조치 ⑤ 다문화가족의 범위 확대
 - ⑥ 폭력 피해 미등록 이주여성에 대한 체류권, 사회보장
 - ⑦ 인신매매 방지 노력
- UN 권고의 합의: 한국 정부는 UN권고에 대해 형식적 수준의 선택적 수용. 이주여성이 UN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이며, 한국의 이주여성 정책이 최소한의 국제적인 기준에 부

9

이주여성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해: 2)이주여성들의 호소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이주여성들에게 가장 접근성이 높은 통로
- 2015년-2021년 7년간 상담 통계 경향:
 - ① 상담의 지속적인 증가(15년 144,616건, 17년 152,255건, 19년 178,452건, 21년 198,092건), 국제결혼은 2005년 정점 이후 전반적인 감소세
 - ② 부부갈등, 이혼문제, 가정폭력 상담 비중이 높음: 여전히 가족내 갈등과 폭력의 문제 심각하며 가정폭력에 대한 더 강력한 정책의 필요성 시사
 - ③ 체류 및 국적 상담 비중이 높음: 배우자에 조력, 혼인 상태, 자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가부장적, 혈통중심적 제도의 문제, 체류 안정성에 대한 적극적 정책 필요
 - ④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의료 상담의 급증: 급작스런 재난 상황에 대하여 관련 정보 통로가 없음을 유추할 수 있음

10

이주여성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해: 3)주요 비자와 이주여성

	B1 (사중면제)	C3 (단기방문)	D2 (유학)	E6 (예술공연)	E9 (비전문취업)	F4 (재외동포)	F5 (영주)	F6 (결혼이민)	H2 (방문취업)
남	88,622	74,118	45,823	884	216,903	228,317	74,714	28,042	83,198
여	90,710	40,145	55,907	2,127	30,047	230,965	86,233	107,945	61,341
계	179,332	114,261	101,810	3,011	236,950	468,682	160,947	133,987	154,537
비고	태국 여성 81,723명			필리핀 여성 1,513명					

- E-9 (비전문취업): 고졸취가제, 2004년 도입, 산업 연수제 대체 도입, 16개 국가, 여성 비율 10% 미만
- H-2 (방문취업): 특례고졸취가제, 2007년 도입, 25세 이상 중국·쿠스권 지역 동포 여성 비율 40% 내외
- E-6 (예술공연): E-6-2 필리핀 여성 다수
- F-6 (결혼이민): F2-1(국민의 배우자)에서 변경, 여성 80%내외, 결혼 가능성 ↑
- F-4 (재외동포): 동포 동포 다수, 여성 비율 50% 이상
- D-2 (유학): 출가 추세, 여성 비율 50% 이상
- B-1 (사중면제): 태국 (여성) 비율 높음 (출처: 2020년 출입국외국인통계연보)

UN 권고·상담통·계다양성과 괴리된 이주여성 정책

- 다양한 형태로 체류하는 이주여성을 포괄하고, 국제적인 기준과 이주여성들의 호소하는 문제를 포함하여 어떻게 성인지적 관점의 이주여성 정책을 강화시킬 것인가가 주요 방향이 되어야 함
- 그럼에도 새 정부의 이주여성 공약은 다문화가족의 자녀 관련 내용만 있음, 실질적인 이주여성 정책은 전무한 것이나 다름없기에 매우 우려

다문화가족 자녀만 있는 새 정부 관련 정책

국민의 힘 20대 대선 공약내용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 자녀,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 다문화가족영·유아와 아동에 대한 교육 및 돌봄 강화
- 양육·돌봄을 위한 조부모비자 발급 개선
- 부모 출신 국가의 다문화 자녀 귀국 및 교육 지원
- 다문화 청소년 맞춤형 진로 지도
- 다문화 청년 글로벌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 학교 폭력 사건에서 불이익 없도록 지원 강화
- 글로벌 시대 문화 융합을 통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13

새 정부 이주여성 관련 정책 비판

- 이주관련 유일한 공약이 다문화가족 정책
- 다문화가족정책에는 자녀에 대한 내용만 있음
- 결혼이주여성을 인구정책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냄
- 여가부 존폐와 맞물려 고려할 때, 한계를 가진 여가부 정책마저 후퇴할 가능성

14

통합적인 이주의 전과정에서 젠더와 인권 관점 필요

	이주과정	정착·통합	귀환
문제	상업적 중개업 속성결혼의 인신매매적 성격, 성인중차별적 중개업	이주여성의 주체적 시민성 발현의 어려움	체류 불안정으로 비자발적 귀환. 현지 사회에서 낙인감, 현지 사회로의 재통합 어려움
현 정책	현지사전정보제공(PDO) 중개업 관리 남성결혼지원(일부 지자체)	다문화 가족 정책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체류·귀화 과정에서의 통제	없음
지향	안전한 이주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방식의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도착하여 그 취약성이 지속됨으로 이를 고려한 젠더 관점의 다문화가족 정책 필요	정착형 이주민에 대한 젠더 인권 관점의 적극적 사회통합 새로운 시민으로서 이주여성이 가진 역동성과 능동성, 다양성을 지닌 주체로서 이주여성 정책 수립	안정적, 자발적 귀환 체류의 안정화로 비자발적 귀환을 줄이고, 삶의 전 과정으로서 귀환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적 관점의 방안 마련

15

성평등 관점의 이주여성인권 정책 강화를 위한 제언

- 가족 중심, 혈통중심 인구 정책에서 이주여성 인권 정책으로 변화
- 결혼이주여성 중심 정책에서 다양한 조건의 이주여성을 아우르는 정책으로 변화
- 이주여성 안정적인 체류권 보장을 위한 여성인권 옹호 책임 부처로서 통제 관점의 법무부에 대응
- 처벌 조항 없는 인신매매방지법의 개정으로 성착취 인신매매에 대한 단호한 대처
- 상업적 속성결혼의 매매혼적 성격을 공식화 시키는 국제결혼 중개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
- 생계와 양육 병행하는 이주여성 한부모 지원
- 현지 사전정보 제공프로그램(PDO)의 강화와 귀환 이주여성 정책 시동
- 이주여성 핫라인 복원 및 강화, 이주여성 상담 기능 강화
- 신고, 수사, 사법 과정에서 이주여성 피해자 통역 등 지원 강화
- 사회보장권 강화
- 이주배경 아동의 보편적 출생 등록 제도 마련
- 이주여성 일자리 정책 강화, 공공기관 이주민 지원기관 이주여성 노동자 권리 강화
- 전국 정책 전달 체계를 갖춘 여성가족부가타 부처 사회통합 관련업무의 이관

16

별첨 자료

- 외국인과의 혼인 추이
- 남성결혼 지원과 결혼 중개업
- 혼인상태, 자녀에 따른 F6비자 세 분류
- 결혼이민자 간이귀화 현황 : 쉽지 않은 귀화
- 폭력 피해 여성 지원체계 비교
- 이주여성 핫라인 관련 논란과 비판
- UN 이주여성 관련 권고
- 다누리콜센터 1577-1366의 2015년-2021년 통계

17

외국인과의 혼인 추이

〈한국인과 외국인 혼인 추이〉											
(단위 : 건)											
년 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한국남성+외국여성	8,945	9,684	10,898	18,750	25,105	30,719	29,665	28,550	28,163	25,142	26,274
한국여성+외국남성	4,680	4,839	4,504	6,025	9,535	11,637	9,094	8,980	8,041	8,158	7,961
년 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한국남성+외국여성	22,265	20,637	18,307	16,162	14,677	14,822	14,869	16,808	17,687	11,100	8,985
한국여성+외국남성	7,497	7,688	7,658	7,164	6,597	5,769	5,968	6,090	5,958	4,251	4,117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외국인과의 혼인'에서 재구성

18

남성 결혼 지원과 결혼 중개업

인권침해 국제결혼 광고를 처벌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법령 1월 8일부터 시행

요 주요개념

- 결혼중개업자는 상대방의 교육, 기, 병무기록 포함한 **나열식 표시-광고**를 하지 못함
 - 위반 시 행정처분(과징금: 100만원, 과징금징수: 100만원)
 -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능
-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 교육」에 **“인권침해 사례 및 보호”** 및 **“다문화사정에 대한 이해”** 추가
- 결혼중개업 이용자와 상대방이 상호 **일부적으로 교환해야 하는** **신상정보**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 및 제59조에 따른 범죄경력 **“아동학대 범죄”** 추가
- 결혼중개업채권시차원에 인해 신고·통보일, 영장·불입·유입여부, 관태료 부과처분 등 추가 공시

- 성·인종차별 국제결혼 중개업 광고에 대한 인권위 진정 (2006)
- 농어민 국제결혼비용지원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2007)
- 결혼중개업법 제정(2007)과 민간의 반대 운동
- 민간의 지속적인 결혼중개업 광고 모니터링
- 여가부, 인권침해 국제결혼 광고 처벌 발표 (2021.1)
- 베트남 유학생과 농촌 홀각결혼 추진한 문경시에 대한 인권위 진정 (2021.5)

19

혼인 상태, 자녀에 따른 F6 비자의 세 분류

결혼이민(F-6)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3년	
체류자격 세부요	약호	분류 기준
	F-6-1	양 당사자 국가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F-6-2	F-6-1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F-6-3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출처: 법무부, 외국인 체류 안내 매뉴얼

20

결혼이민자간이 귀화 현황 (출처:법무부) : 쉽지 않은 귀화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신청자	10,006	10,182	9,881	9,617	10,489	
불허자*	1,867	2,822	3,121	3,158	2,789	
불허 사유	원전출국	26	19	5	18	28
	기간미충족	3	8	2	3	1
	소재불명	1				
	생계유지능력 부족	31	11	2	22	6
	주신청자 불허	2				
	조사불응	0				
	서류변조	1	2		8	
	범죄경력 등 풍행미단정	194	260	75	583	182
	필기2회 불합격	114	243	102	175	108
	면접2회 불합격	1,234	2,250	2,929	2,274	2,421
	요건미비	1	29	6	70	28
	기타	260			5	15

21

폭력 피해 여성 지원 체계 비교

	핫라인	상담소	쉼터
선주민	여성 1366	성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 성매매 피해 상담소	성폭력 피해 쉼터 가정폭력 피해 쉼터 성매매 피해 쉼터
이주민	미약 (다누리콜센터 일부 기능) (가정폭력방지법, 다문화가족지원법)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가정폭력방지법)	이주여성쉼터 (가폭·성폭법, 28개소) 외국인성매매쉼터 (성매매방지법, 1개소)

22

폭력 피해 이주여성 핫라인 관련 논란과 비판

(1) 이주여성 핫라인 역할 불분명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설치 (2006): 이주여성 핫라인
- 다누리콜센터 1577-5432 설치 (2011): 다문화가족정보제공 (여가부·포스코 민간협력 3년)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다누리콜센터 통합: 다누리콜센터 1577-1366 (2014)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상담서비스부 산하로 운영, 양육비 상담, 가족 상담, 미혼모 상담 등과 통합되어 이주여성 핫라인 역할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2) 다누리콜센터 내 국제결혼 피해 전화 운영

국제결혼 피해 전화 설치 (2013): 주로 중개업에 의한 피해, 외국인 아내 가출 등 한국인 남성들의 욕구 반영하고 있음. 젠더 폭력 피해 상담 기능에 가해 여지가 있는 상담이 공존하는 형태가 되었음

(3) 이주여성 핫라인 기능의 복원

다양한 국적의 이주여성 및 그 자녀의 위기 개입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종합전화센터(다누리콜센터 1577-1366)'로 흡수된 '이주여성긴급전화센터'의 기능 복원 및 활성화 필요

UN 이주여성 관련 권고

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07)	한국인 남편의 전격인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 별거가 아니라도 이주여성의 거주 자격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 채택할 것
사회권위원회 (2009)	한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이 그들의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고 거주자격을 얻거나 귀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이들이 직면한 차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11)	외국인 여성들의 가정폭력 관련 자신의 권리와 보상 방안을 인지하도록 인식개선 캠페인을 시행할 것 결혼중개업자, 인신매매자, 배우자에 의한 학대와 학취로부터 외국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및 조치를 취할 것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이 국적 신청서를 제출할 때 남편의 신원보증을 받지 못하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국적 취득 요건과 관련한 모든 차별적 조항을 제거하고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9조에 부합하게 국적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개정할 것
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12)	별거와 이혼 시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이후 체류허가와 기타 조항을 고려하여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이주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재권고) 가정폭력, 성적 학대, 인신매매, 기타 다른 형태의 폭력을 당한 외국인 여성 피해자들이 사법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폭력피해여성들에게 합법적인 체류를 보장할 것

UN 이주여성 관련 권고

<p>인종차별철폐보고관 (2015)</p>	<p>별거 또는 이혼의 경우, 결혼의 결과 또는 지속기간, 그리고 결혼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유무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귀적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에게 체류의 안정성을 포함한 동등한 권리를 부여할 것</p> <p>대한민국 귀적의 남성이 특정 국가의 여성과 결혼하고자 할 때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관행을 없애도록 노력할 것</p> <p>다문화가족 개념을 재정의하고, 국제결혼과 관련한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를 없애기 위한 광범위한 공공 인식개선 캠페인을 시행할 것</p>
<p>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18)</p>	<p>젠더기반폭력으로부터 이주여성을 보호하는 적절한 조치, 젠더기반폭력 피해자 미등록 이주여성이 체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허가할 것, 모든 결혼이주민들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건 없는 적용 확대</p> <p>결혼이주민의 혼인관계 종료 사유, 자녀양육여부, 한국인 배우자 가족 부양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할 것, 한국 국적 자녀와 함께 본국으로 귀환한 결혼이주민들이 이혼절차와 양육권과 관련하여 지원을 제공받도록 정부가 노력할 것,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재검토하고 확대하여 차별없이 모든 가족에게 동등한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p> <p>포괄적 인신매매 방지법을 제정하고,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최소한 구제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그들에게 안정적 체류자격과 기초생활보장을 허가할 것</p>

25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상담 통계 : 언어별 (2015-2021)

	계	베트남	중국	몽골	캄보디아	필리핀	러시아	우즈베키	태국	러오스	네팔	일본	한국	기타	
2015	계	116,039	44,675	18,498	3,580	9,813	11,942	4,755	5,917	3,911	851	643	2,178	5,365	3,911
	비율	100	38.5	15.9	3.1	8.5	10.3	4.1	5.1	3.4	0.7	0.6	1.9	4.6	3.4
2016	계	124,401	48,833	21,258	3,692	11,348	11,163	6,293	4,838	5,408	524	502	2,592	3,874	4,076
	비율	100	39.3	17.1	3.0	9.1	9.0	5.1	3.9	4.3	0.4	0.4	2.1	3.1	3.3
2017	계	128,779	48,244	20,937	3,716	11,966	11,558	7,846	5,385	5,855	375	458	2,749	4,491	5,179
	비율	100	37.5	16.3	2.9	9.3	9.0	6.1	4.2	4.5	0.3	0.4	2.1	3.5	4.0
2018	계	132,115	49,270	18,329	4,593	9,522	11,273	8,245	6,796	8,925	613	533	2,483	5,452	6,081
	비율	100	37.3	13.9	3.5	7.2	8.5	6.2	5.1	6.8	0.5	0.4	1.9	4.1	4.6
2019	계	134,849	47,781	18,436	4,180	9,574	12,120	10,244	5,383	9,519	431	376	2,545	8,003	6,257
	비율	100	35.4	13.7	3.1	7.1	9.0	7.6	4.0	7.1	0.3	0.3	1.9	5.9	4.6
2020	계	161,466	48,051	29,756	5,450	11,377	9,295	17,291	5,174	10,329	366	654	3,612	4,977	15,134
	비율	100	29.8	18.4	3.4	7.0	5.8	10.7	3.2	6.4	0.2	0.4	2.2	3.1	9.4
2021	계	194,802	45,938	36,060	6,551	10,570	8,824	28,790	8,243	12,469	265	1,244	4,331	4,444	27,073
	비율	100	23.6	18.5	3.4	5.4	4.5	14.8	4.2	6.4	0.1	0.6	2.2	2.3	13.9

출처: 다문화가족지원 포털 다누리 (<https://www.liveinkorea.kr>)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상담통계에서 재구성

26

		총계	가목	일반목적	상목적	상해배	부부감동	가목감동	상려*장서	여론문제	일반법률	채류및국적	취업및노동	
2015	계	144,616	15,399	945	1,434	173	17,094	4,559	2,702	16,159	7,851	13,959	5,350	
	비율	100	10.6	0.7	1.0	0.1	11.8	3.2	1.9	11.2	5.4	9.7	3.7	
2016	계	150,520	12,997	1,026	1,134	362	16,927	3,986	2,701	14,558	9,942	16,474	5,169	
	비율	100	8.6	0.7	0.8	0.2	11.2	2.6	1.8	9.7	6.6	10.9	3.4	
2017	계	152,255	12,627	912	1,327	166	14,263	3,617	3,083	12,655	11,524	16,672	5,903	
	비율	100	8.3	0.6	0.9	0.1	9.4	2.4	2.0	8.3	7.6	11.0	3.9	
2018	계	150,983	12,578	1,374	2,053	389	14,600	3,115	3,464	11,778	13,576	15,902	7,669	
	비율	100	8.3	0.9	1.4	0.3	9.7	2.1	2.3	7.8	9.0	10.5	5.1	
2019	계	155,641	14,196	1,114	1,589	257	16,097	3,287	3,524	10,726	16,914	14,573	7,855	
	비율	100	9.1	0.7	1.0	0.2	10.3	2.1	2.3	6.9	10.9	9.4	5.0	
2020	계	178,452	12,114	869	1,193	85	13,211	2,700	3,051	8,773	13,327	11,146	6,625	
	비율	100	6.8	0.5	0.7	0.0	7.4	1.5	1.7	4.9	7.5	6.2	3.7	
2021	계	198,092	9,814	715	915	45	8,240	1,604	3,066	4,403	9,648	6,617	4,186	
	비율	100	5.0	0.4	0.5	0.0	4.2	0.8	1.5	2.2	4.9	3.3	2.1	
				생활							국제결혼 피해			
		상대	의뢰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1577-1366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한	자녀관련	가타상황	국제결혼중 개업관련피 해	배우자관련 피해	가타피해	기타		
2015	계	7,722	8,391	2,440	7,205	2,868	4,807	22,823	388	190	206	1,951		
	비율	5.3	5.8	1.7	5.0	2.0	3.3	15.8	0.3	0.1	0.1	1.3		
2016	계	6,161	10,664	2,274	11,923	2,138	5,734	24,933	275	223	108	811		
	비율	4.1	7.1	1.5	7.9	1.4	3.8	16.6	0.2	0.1	0.1	0.5		
2017	계	5,716	11,561	3,083	13,086	2,881	7,277	24,700	185	209	71	737		
	비율	3.8	7.6	2.0	8.6	1.9	4.8	16.2	0.1	0.1	0.0	0.5		
2018	계	4,265	13,500	2,971	7,269	2,380	7,118	26,118	169	210	75	410		
	비율	2.8	8.9	2.0	4.8	1.6	4.7	17.3	0.1	0.1	0.0	0.3		
2019	계	3,781	17,449	3,092	11,459	2,741	6,821	19,474	148	190	41	313		
	비율	2.4	11.2	2.0	7.4	1.8	4.4	12.5	0.1	0.1	0.0	0.2		
2020	계	3,554	61,263	1,815	10,342	1,621	6,029	20,337	93	101	38	165		
	비율	2.0	34.3	1.0	5.8	0.9	3.4	11.4	0.1	0.1	0.0	0.1		
2021	계	1,282	107,742	1,355	10,496	1,318	4,493	22,013	54	36	6	44		
	비율	0.6	54.4	0.7	5.3	0.7	2.3	11.1	0.0	0.0	0.0	0.0		

인권과 공존하는 이주여성 정책과제

김민정(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

인권과 공존하는 이주여성 정책 과제

김민정(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

허오영숙대표님이 상세히 발제에 어떻게 첨언해야 되나 고민하다,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이주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나열하고자 합니다.

한국 정부가 보호하겠다고 관련 정책계획에서 언급한 이주여성 범위는 좁습니다.

‘한국민과 혼인관계 유지’ ‘한국민 미성년자 자녀양육’ ‘직계존속부양’ 그리고 ‘합법체류’ 범위 안에 있는 ‘가정폭력피해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이 그 범위입니다.

그리고 2001년 미국정부 인신매매 3등급 국가 지정 이후 그나마 한국 정부가 잊지 않고 언급하는 약 2,000~3,000여명 규모의 예술홍행체류자(F6-2) 관련 몇 가지 제도만 관련 기본계획¹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주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핵심은 한국 정부의 출입국 체류 정책의 전향적인 변화입니다. 관련하여 주요 이주여성그룹별 현재 상황을 먼저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정책과제를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끊임없이 유형 입증자료를 요구당하는 결혼이주 여성들2. 외국 국적자간 가정폭력 피해자(여성, 아동) 보호3. 성착취피해 이주여성들 |
|---|

1. 결혼이주여성- 체류자격연장, 영주자격, 국적취득

1) 현황

○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에 생활하면서 국적을 받을 때 까지 지속적으로 유형의 무언가를 입증해야 함. 국경을 넘는 과정, 한국에서 가족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한국어 능력, 혼인 진정성, 경제적 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입증해야 함.

¹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18년-2022년),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8년-2022년)

○ 이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한국인 가족의 협조·지지를 받지 못하는 결혼이주여성과 한부모 결혼이주여성들은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됨.

○ 여전히 한국인 배우자의 직·간접적인 동의² 없이 영주자격과 간이귀화 신청 어려움.

○ 이혼 후 체류 자격 연장 가능한 “본인이 책임이 없는 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출입국관리당국은 온전하게 상대방의 잘못임을 알 수 있는 입증자료³를 원함.

○ 남편 사망, 실종, 자녀양육, 이혼 등 결혼이주여성들 - 국적취득 및 영주자격 신청을 위한 요건 까다로워 짐.

- 국적신청 → 귀화적격시험합격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필요
 - 영주자격신청 → ① 기본소양 :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과정 이수 ②생계유지능력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수입의 합이 전년도 국민총소득⁴의 80% 등 수준 등

구분	국내 체류 기간		
	2년~5년	6년~9년	10년 이상
자녀 1명	기준금액의 20% 경감	기준금액의 30% 경감	기준금액의 40% 경감
자녀 2명	기준금액의 30% 경감	기준금액의 40% 경감	기준금액의 50% 경감

- 한부모 영주자격신청 : 생계유지능력 입증에 필요한 소득액 기준이 높음. (국민총소득에서 20%감면 = 2,998만원. 국민총소득에서 30%감면 = 2,623만원)

○ 사회통합이수제도⁵ - 특히 저소득 한부모 가족 가장인 이주여성의 경우, 국적취득과 영주자격 신청 조건 구비는 힘든 노력과 희생이 필요한 과정 임.

² 국적등 신청할 때 한국인 배우자와 동행을 필수라는 규정은 없어졌지만, 면접시험날에 한국인 배우자와 동행하
 라함. 국적·영주자격에 필요한 서류중 한국인배우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음.

³ 폭력으로 “찢어지고 부러지고 터지고”

⁴ '20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 3,748만 원

⁵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18년-2022년) 24쪽 : 사회통합 체계와 체류, 영주, 국적의 연계를 강화하여 재
 한 외국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질을 갖추 수 있도록 유도.

교육명 교육명 구분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과정	기초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기본	심화
총 교육시간	15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70시간	30시간
평가	없음	1단계평가	2단계평가	3단계평가	중간평가	영주용 종합평가	귀화용 종합평가

- 영주자격 취득을 원하는 한부모 가족 이주여성 중간단계 이수를 해야함. 이때 한 번도 떨어지지 않을 경우 최소 1년 소요됨.
- 국적취득을 원하는 한부모 가족 이주여성의 경우, 5단계 심화 과정을 515시간 한 번도 떨어지지 않을 경우 : 주 8시간, 최소 1년 4개월 필요
- 1단계 평가시험에 떨어질 경우 재수강해야 승급
- 중간평가 떨어질 경우 재수강 후 중간평가 최저점수 이상 취득해야 이수 인정
- 주말반 이용만 가능함.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녀를 양육하는 이주여성들은 참여하기 쉽지 않은 과정임.

2) 과제들

- 결혼이주여성은 한국민의 배우자와 혼인신고하고, 혼인진정성을 인정 받은 후 한국입국⁶ 사증을 받아 한국에 입국한 사람들임.
- 캐나다 정부 2017년 4월에 조건부 영주권 제도 폐지⁷ 했음. 관련된 가정폭력 피해를 악화시켰음을 인정함.
- 한국 정부도 혼인의 진정성이 심각히 의심되지 않는다면, 본인이 원할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동의와 경제적인 능력에 관계없이 영주자격과 간이귀화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⁶ 2014년 4월, 한국정부가 시행한 결혼이민사증비자발급 정책 역시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기혼자로 본국에 남겨진 여성들이 발생함. 본 토론문에서는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음.

⁷ 2021. 김상철등. 외국국적 가정의 가정폭력 피해자의 체류자격에 관한 해외 법제 검토., 서울대사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인법률센터

2. 외국 국적자간 가정폭력 피해자(여성,아동) 보호

1) 현황

- 영주자격자(F5)의 외국인 배우자(F2)는 가정폭력피해자라도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자녀가 있어도, 이혼하면 한국 내에서 일정 소득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을 제외하고는 체류자격 연장 안됨.
- 방문취업(H2) 및 재외 동포 체류자격자의 배우자와 자녀(F1), 가정폭력등으로 경찰신고 시 가족경제 주 부양자인 남편 체류자격 연장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기에 경찰 신고도 쉽지 않음.
- 출입국관리법 내에는 외국 국적자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관련 조항 없음.
- 가정폭력등을 이유로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대상 아님.

제25조의2(결혼이민자에 대한 특칙)

① 법무부장관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 4. 5.]

제25조의4(아동학대피해자에 대한 특칙)

① 법무부장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아동 및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아동학대행위자는 제외한다)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4. 23.]

2) 과제들

- 영주자격자의 가정폭력 피해 배우자들의 경우 피해자 적극적 구제를 위해, 한국민의 배우자와 같은 수준의 별거·이혼 후 체류정책 필요함.
- 국내 영주자격자와 재외동포자격, 방문취업자격자, 전문취업자등의 가정폭력피해자들의 경우는 ‘체류자격외 활동허가가 가능한 임시 체류자격’과 같은 인도적인 조치가 필요함.
-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가해자로부터 안전하게 벗어 나서 일을하면서 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주어져야 함.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주체류자가 임시 체류자인 경우 (취업 O/X)	영주권	U 비자 이민 (O)	인도적 이민 (O)	-	-
	임시체류자격	최대 4년 (U 비자, O)	최소 6개월 (TRP, O)	-	-
주체류자가 영주권자 동일 경우 (취업 O/X)	영주권	면제U 비자 이민, 조건 면제, 자기청원, 추방 취소추방취소 (O)	인도적 이민 (O)	영주권 심사 계속	가정폭력 피해자 영주비자 (O)
	임시체류자격	최대 4년 (U 비자, O)	최소 6개월 (TRP, O)	-	(가정폭력 피해자 취업비자, O)
		독일	영국	네덜란드	
주체류자가 임시 체류자인 경우 (취업 O/X)	영주권	-	-	영구적 인도주의적 체류자격 (O)	
	임시체류자격	1년 (O)	-	1년 (일시적 인도주의적 체류자격, O)	
주체류자가 영주권자 동일 경우 (취업 O/X)	영주권	-	일반 영주권 (O)	영구적 인도주의적 체류자격 (O)	
	임시체류자격	1년 (O)	3개월 (DDV, O)	1년 (일시적 인도주의적 체류자격, O)	

출처 : 2021.김상철등 외국국적 가정의 가정폭력 피해자의 체류자격에 관한 해외 법제 검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3. 성착취 피해 여성들

1) 상황

- 제3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이 밝히고 있는 성착취 피해 인권보호 강화 방안은 예술홍행체류자격(F6-2)만 언급함.

①예술홍행 종사자 구제절차 접근 지원(여가부) - 외국인 지원시설운영. 업소, 공연기획사 관계부처 합동 점검 시행

④인신매매 여부 확인 강화(법무부) - 예술홍행자격 소지자에 대한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 시 자유로운 계약 여부 확인 등

- 인권침해 사전 인지 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지표*’에 따라 업무 처리

*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지표 : UN 인신매매방지의정서('15년 기준)에 기반하여 인신매매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조기에 식별하여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지표

○ 한국 내에는 다양한 체류자격으로 다양한 형태 성착취 우려 업소에 이주여성들이 유입되어 있음.

○ 성매매 강요 피해자 - 경찰조사등 진행되는 동안 G1체류자격과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등을 신청할 수 있지만, 강제출국에 대한 두려움, 정보 부족등으로 구조요청을 하지 못함.

○ 본인이 처한 본국에서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현재 상황을 참고 견디려는 경향이 강함.

○ 성착취 우려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식별하고 보호하는 조치를 실시해야 함.

“(마사지업주) 성매매 강요로 기소되는 경우도 잘 없고, (태국여성) 대부분 강제 출국되니까 성매매 강요를 호소하면 십터까지 가는 경우도 잘 없다. 생활 질서계에서 단속하고 여청과에서 수사하는데, 2원화 돼 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 대부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한번 하고 강제출국. 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니까.”⁸ - 관련 활동가

(아파트에서 감금상태로 있었나?) 아파트에 혼자 있을 때도 있고 김씨랑 같이 있을 때도 있었다. (김씨가 없을 때 문을 열어봤나?) 열어봤다. 여니까 문이 열렸다. 그런데 혼자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하는지도 모르고 한국어도 전혀 몰라서. 그런 상태로 도망갔다가 업주한테 금방 잡힐 것 같아서. - 성착취 피해자

(브로커는) 경찰한테 “자발적으로 한국에 왔다. 그 남자들이 테스트 한 적 없고, 그들로부터 성매매 강요를 받은 적이 없다. 나 스스로 성매매를 했는데 그만두고 태국에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라고 했다. 아니면 (피해자) 동영상을 유출시킨다고. 태국에 있는 식당에서 만난 한국 남자들 옷차림이나 태도 행동이 마피아/조직폭력배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들이 정말 동영상을 찍었나?)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그 사람들이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진술을

⁸ 2017, 아시아의 창, 타이마사지업소 내 태국이주여성 노동실태와 이동경로에 관한 기초조사 보고서 중

번복하지 않으면 동영상은 인터넷에 유포시키겠다”고 했다. - 성착취 피해자

2) 과제들

- 성착취 우려 업소 단속된 모든 이주여성들에게 출입국관리 당국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지표’에 따라 인신매매 피해 등이 의심될 경우, 상담 소등 연계.
-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체류자격 - 성착취 피해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초과체류로 인한 강제 추방될 두려움을 덜면서 자신의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류자격 필요.

이주여성 입장에서 본 이주정책의 방향

원옥금(이주민센터 동행)

이주여성의 입장에서 본 이주 정책의 방향

원옥금(이주민센터 동행)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노동자 상담과 이주여성 지원을 위해 활동 중인 이주민센터 동행의 대표이자 결혼이주여성입니다. 한국에서 이주여성으로 살아가는 사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와 같이 결혼을 계기로 이주를 하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혼이주여성이 처음 한국에 오게 되면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렵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말도 서툴고 생활습관이나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편이 친절히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주여성은 어린아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법적으로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이주여성의 신원을 보증해 주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으면 국내 체류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은 저절로 불평등한 관계와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이주여성들도 본국에서는 스스로의 인권과 주체성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 부터는 가족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예속된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아이를 낳아야 하고 시부모를 모셔야 하고 남편에게도 복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정이 온전히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사소한 다툼이나 갈등이 있어도 외국 땅인 한국에서 특별히 하소연할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또한 이주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엄연히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주여성들은 가정 내의 약자이자 사회에서의 소외계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결혼이주여성들의 인권이나 주체성, 자아실현 등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결혼이주 여성들은 한국말이 부족하고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서 온 배경 때문에 스스로 위축되어 매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태어날 아이가 한국말을 못하는 엄마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기도 하고, 학부모가 되어서도 아이를 위해 될 수 있으면 엄마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모르게 하기 위해 학교에도 가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아이 학교에서 연락이 오면 한국말을 잘 못하는 저를 대신해 남편이 나섰었고, 아이도 처음에는 엄마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제가 잘 모르니 자연스럽게 아빠한테만

물어보게 되고, 그렇다 보니 엄마로서의 역할에서도 점점 소외되는 일이 벌어지곤 했었습니다.

한편, 제가 상담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은 가정폭력에 시달리기도 하고 아이 없이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미등록체류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한 이후에야 힘들어 하면서 해결책을 찾아나서야 하는 걸까요? 사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편과 사회의 인식변화가 필요하고, 법과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난 후에 해결책을 찾기 보다는, 사전에 이를 예방하는데 힘쓰고 이주여성들이 한국에 잘 정착하도록 돕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방법으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우선 이주초기단계부터 한국의 상황과 문화를 익히도록 도와야 하고, 최소한의 법적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여 결혼 후 3개월 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한국어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비롯한 여성가족부 소관 기관에서 한국어, 요리, 컴퓨터, 가족관계 등 교육, 가족 갈등 해소 상담, 취업 상담 및 연계, 통번역 등을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조모임 프로그램을 통해 한 달에 한 번 동포들끼리 서로 만나며 한국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핫라인을 통해 통번역부터 경찰 신고, 피해자 쉼터 제공, 이혼 시 법적, 생활적 자립 지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프로그램들은 이주여성 당사자가 주체로써가 아니라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엄마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한 동화 정책이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이 프로그램들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점점 장기 체류하는 결혼이주여성이 늘어나면서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로 인식되고 그에 맞게 정책이 뒤따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결혼이주여성들은 소극적으로 교육만 받는 대상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 적극적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존재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들이 리더 역할도 잘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 해줘야 합니다. 결혼이주 여성 선배가 후배를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멘토 멘티 프로그램처럼, 결혼이주여성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능력개발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양성

된 결혼이주여성을 이주민 서비스를 하는 공공기관과 시설들이 안정적으로 고용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성가족부가 폐지될 거라는 소식을 듣고 눈앞이 막막해옵니다. 수년 전에 예산부족을 이유로 ‘예비결혼이민자’에 대해 현지 사전 교육이 폐지된 곳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었는데, 이제는 이주여성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 온 여성가족부가 폐지된다니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최근 몇 년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사회운동에 참여하면서 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 역시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여성가족부 소관 기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주여성을 도와주거나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처는 이주여성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곳이 아니라는 느낌이 듭니다. 전에 제가 이주여성 상담건과 관련해서 출입국 관리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얼마나 고압적이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겁이 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주여성이 소외되고 불안정한 처지에서 벗어나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堂堂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이주여성의 어려운 점을 살펴야 하고 이를 입안하고 시행할 때는 이주여성의 눈높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이주여성 개인의 삶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가 배제된 일방통행식의 정책이 시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혼이주여성 정책은 권한 있는 부처의 주요사업으로서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난민여성과 아동인권을 위한 정부정책 방향 제안

박정형(한국이주인권센터)

난민여성과 난민아동인권을 위한 정부정책 방향 제안

박정형(한국이주인권센터)

차기정부의 이주민, 이주여성 정책 없음에 대한 우려

차기정부는 이주여성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처한 구조적 차별을 인식하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가? 안타깝게도 차기정부가 내세운 공약들, 그리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선언과 함께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을 보며, 향후 사회적 소수자들의 구조적 차별이 해소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을 갖기가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차기정부의 대선 공약에는 ‘여성’이라는 정체성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엄마’가 대체하고 있다. ‘이주민’이 처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도 소거되어 있는 채로 이주민에 대한 공약은 ‘다문화가족’으로만 존재하고 그마저도 ‘자녀의 양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차기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당황스러운 ‘여성가족부’의 폐지 공약 및 실천은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소수자들과 그들이 처한 불평등의 문제들을 삭제시키고 축약시키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때문에 여성 전담부처로서의 여성가족부가 지금까지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지,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검토하고 발전적 변화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전담부처의 ‘소거’에 방점이 찍힌 작금의 상황들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불평등한 상황에 놓여있는 다양한 상황의 ‘이주여성’들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물론 현 정부도 그리고 이전 정부들도 이주민 및 이주여성들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이주여성에 대한 정책도 결혼이주여성,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로서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이주여성들은 이 과정을 비단 수동적 보호의 대상으로서만 참여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통역과 상담의 과정에서 수많은 이주여성들이 주체적 행위자로서 참여했다. 이주여성에 대한 정책이 만들어 놓은 물적 토대는 다양한 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를 경험하고 사회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경로들을 만들어냈다. 지금은 더 나아가서 이주여성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참여와 성장의 과정에서 맞닥뜨린 유리천장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도전하고 있다. 차기 정부의 작금의 행보는 이런 변화의 흐름들을 매우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가 여성전담부처로서의 여성가족부를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 뿐 만 아니라 이주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이끌어내는 기반이라고 평가한다면, 차기정부가 표현한 여성가족부의 ‘역사적 소명’도 다르게 인식될 것이다. 향후 정책들은 혼인을 기반으로 한 여성이 아닌 다양한 이주여성들이 처하는 폭력과 피해들을 포괄해야 하며, ‘피해와 보호’에 가려진 이주여성들의 사회적 욕구에 대한 논의들을 정책적 의제로 가져와야 한다. 즉 여성가족부는 이주여성들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피해와 보호’의 관점을 넘어서서 이주여성들이 사회적으로 평등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구조적 토대를 마련해야 하는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차기정부의 여성가족부 해체논의, 그리고 이주민, 이주여성에 대한 정책 없음은 역사를 퇴보시키고 있다.

난민, 난민여성들이 처한 상황

우리사회는 난민, 난민여성들이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사회적 성장이 가능한 사회라고 할 수 있는가? 어느 누구도 그렇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사회적 안전망에서의 박탈, 노동의 기회의 박탈, 출산·양육·교육환경에서의 배제는 난민들을 빈곤한 상황으로 몰아넣는 ‘빈곤의 순환고리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

한국이주인권센터에서는 2020년에 코로나시기의 인천지역 난민들의 재난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코로나 시기 인천지역 난민들의 2020년 소득평균은 전년도에 비해서 반토막이 났고(2019년 1,435,397원에서 2020년 소득평균 775,988원으로 감소), 특히 아이가 있는 3인이상 가구들의 다수가 차상위 계층,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난민신청자와 인도적체류자 그리고 비자가 없어진 난민들은 수급권자 대상이 되지 못한다. 즉 빈곤한 상황에 놓여도 한국사회가 그나마 만들어 놓은 사회적 안전망에 전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난민신청자와 인도적체류자는 취업에 제한이 있고, 제한된 일자리를 찾는 것마저 정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센터, 여성가족부가 관리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같은 기관도 마찬가지이다. 난민신청자를 제외한 비자의 난민들은 일자리 알선 대상이 아니라며 외면하고 있다. 일자리 알선 연계뿐만 아니라 취업교육에서의 외면도 마찬가지이다.

지역건강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난민신청자들은 출산비에서부터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아이를 낳고 나서도 정부나 지자체의 양육비 보육비 지원에서 배제되어 있다. 어린이집/유치원비

는 보육기관에서 특별히 배려해서 도움을 주지 않는 이상 보육비는 40만원이 넘는데 자녀들을 보육기관에 보내기 어려운 가정은 부부가 모두 생계활동을 하고 싶어도 아이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돌보는 역할은 대부분 안정적이고 충분한 급여를 주는 직업을 구하는 것이 남성들 보다 더 어려운 여성들의 몫이다. 정부의 보육지원 시스템에서 배제된 상황에서는 난민들은 자녀들을 보육기관에 보내도, 보내지 못해도 빈곤한 상황에 빠지기는 마찬가지이다.

각 지역에 운영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결혼이주여성이 아닌 난민여성들의 한국어교육 및 서비스 참여는 배제시키거나 후 순위로 미룬다. 난민들이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환경에서 여성들은 가정폭력을 포함한 폭력에 노출되어도 호소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각 지역의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및 쉼터는 통역과 상담의 주요 대상에 난민 여성들의 언어, 비자, 생활문화적 상황들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난민들의 전반적인 사회적 성장이 불가능한 조건 속에서 난민여성들이 폭력피해를 호소하여 상담을 받더라도 가족에게서 독립된 자신만의 삶을 상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난민아동들이 처한 상황

그렇다면 난민아동들이 처한 상황은 어떠한가? 한국사회는 아동들의 교육권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지만 과연 난민아동들에게도 그러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보육기관으로의 접근에서부터 배제된 난민아동들은 발달지연 등 아이들의 특별한 상태들이 보육기관 교사들로부터 포착되기 어렵다. 한국어를 하지 못해 초등학교에 진학하기 전부터 학습 격차가 생긴다.

교육수급권자의 대상 조차 되지 못하는 인도적체류자와 난민신청자들은 교육비,교육급여의 접근에서도 제한되어 있다.

학교는 학교 안의 소수자인 난민 자녀들의 실질적 교육권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특히 코로나 시기 불평등의 격차는 더욱 커지는데 위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시기에 취학자녀가 있는 가정들의 절반 이상은 온라인 수업과 출석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고(50%), 온라인 수업과 출석에 대한 학교의 안내를 이해하지 못하고(54.5%), 온라인 수업을 위한 컴퓨터와 같은 학습도구가 없고(50%), 학교 출석 시스템을 이해하기 어려워 결석처리가 된 경험(50%)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코로나 시기 특별히 발생한 상황이 아니라 코로나 시기에 가중되어 더욱 드러나는 차별이다.

더불어 난민들의 불안정한 체류, 그리고 비자에 대한 제한은 고등교육에 진학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나가며

결국 난민들은 자신들의 능력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만들어 놓은 제도적 제약들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기회도 없고, 불안정한 노동상황에 내몰리며, 빈곤한 상황에 놓여도 사회적 안전망에서 배제되어 있다. 보육과 양육에 대한 지원의 배제는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막는 장애가 되며 가족이 경제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하다. 부모들은 실질적인 교육의 기회에서 배제되는 자녀들 역시 성장하지 못할까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난민, 난민여성, 난민아동들은 사회적 성장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구조적 불평등의 상황에 놓여져 있다. 불평등한 구조는 난민을 사회적으로 고립된 집단들로 계속 양산해내고, 그러한 고립은 난민들을 동정 및 시혜 그리고 혐오라는 극단의 상황에 놓이게 만든다. 난민, 난민여성, 난민아동들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능동적으로 한국사회에 참여하고 미래를 계획해 나가기 를 누구보다도 원하고 있다. 그런 그들을 난민이라는 벽 안에 넣는 것은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과 차별을 인식하지도, 인정하지도, 해소하려고 노력하지도 않는 한국사회이다. 차기정부가 부디 '소수자'의 존재를 소거시키는 것이 아닌, 소수자들이 처한 차별들을 인정하고 그 벽을 허무는 것에 전념해주기를 바란다.

지역사회 관점에서 이주민의 현실과 사회통합

이영아(아시아의 창)

1. 3차 외국인 기본계획(2018-2022) 사회통합 정책내용

1) 정책목표 : 질 높은 사회통합

2) 중심과제 :

- 이민단계별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 추진
- 이민배경 자녀 역량강화
-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지원 내실화 :

결혼이민자, 이주청소년, 난민인정자에 재취업, 창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일배움카드 발급

국민의 배우자 등 지원대상 외국인 사회안전망 지원 긴급복지 지원 시행(생계비 주거비 지원)

아동복지법 적용 활성화(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등록을 이행한 외국국적 아동도 아동복지법 적용대상이라는 사실 홍보 관계자 교육 강화)

근로자 생활시설 개선, 집중 거주지역 환경개선,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강화.

- 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 : 지역사회 정책참여 활동 기회확대 (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 위원에 외국인 주민 위촉 및 운영 활성화)

→긴급의료비를 제외하고 긴급복지 지원에 일반 이주노동자와 아동은 제외되어 있음.

2. 새 정부의 공약 내용

다문화 가족 영 유아와 아동 교육, 돌봄을 위한 조부모 비자발급, 청소년 맞춤형 진로지도, 인재양성, 학교폭력 대응, 다문화 수용성 제고(국민의식 함양 및 학교 다문화 이해 및 단합

을 위한 프로그램)

→다문화 아동청소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사회통합을 위한 이주민 정책은 보이지 않음.

3. 지역에서 만나는 이주민의 현실

이주가 장기화되며 지역에서 만나는 이주민들은 매우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임. 초기에는 단신이 많았다면 점차 가족단위로 생활하는 경우가 늘고, 그 중에서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음. 가족의 형태도 다양하여 한 부모 가족의 경우도 있고 조부모나 친인척이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도 있음.

사회안전망 작동의 부재 : 결혼이민자와 난민인정자를 제외하면 긴급복지 지원 적용대상에서 이주노동자는 제외되어 있음, 코로나19 긴급지원에서 이주노동자는 제외됨.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일감이 줄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이주민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없는 상태로 견디어야 함. 오랜 실직생활로 자녀를 고국에 보내기도 함.

노숙자로 생활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한국인 노숙쉼터에서도 거절하고 이주노동자 쉼터에서도 거부당하기도 함.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이주노동자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혼자서 생계와 양육을 모두 책임져야 함.

경제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인권침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임금체불, 퇴직금체불, 해고가 발생하여도 이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어려움.

이주아동 : 외국국적이라 무상보육에서 제외되는 아동들, 체류자격이 없어서 건강보험이 안 되는 아동, 체류자격이 없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 법무부의 미등록체류자격에서 제외되는 아동들(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체류자격을 받은 가족 내 미등록아동존재),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아동들, 폭력 피해자임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들.

4.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점

- 새 정부의 공약을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집중되어 있고 이주민 인권이나 사회통합을 위한 접근은 사실 보이지 않음.

한국의 이주정책은 이주민들이 정주하는 사람이 아닌, 잠시 머무는 사람으로 인식하여 주민으로서 접근이 부재함. 권리도 사회권리적인 면보다 노동권에 한정하여 그것도 매우 협소하게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이주정책은 이주민들이 다양한 욕구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민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폭 넓게 재정립되어야 함.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공약내용인 생계급여 대상, 어려울 때 도움 주는 국민안심지원제도와 같은 사회안전망 지원에서 복지사각지대 대상에 한국국적이 없는 이주민도 확대적용 하는 것이 필요함.

그리고 국적중심의 사회복지 적용과 이주노동자 직장이동, 기숙사문제, 가족결합권 불가와 같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차별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함.

경기도의 몇몇 지자체에서 이주아동에게도 영유아보육비를 전액, 일부 지원하는 것을 볼 때 중앙정부가 의지를 가진다면 이주아동에게도 무상보육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봄. 그리고 폭력피해를 입은 아동의 경우 체류자격, 출생신고에 상관없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이주민들의 정착과 적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존재함, 물론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이주민을 프로그램 대상보다는 하나의 정책을 평등하게 적용하여 권리주체로 만드는 것이 중요함. 사회통합은 이주민도 출발선에서 함께 설수 있도록 동등하게 만들어야 가능하다고 봄.

경기도 의회에서 누리과정지원에서 이주아동을 포함하는 조례를 개정하였지만 많은 지자체에서 실행이 안 되고 있음. 중앙정부와 아울러 지자체도 통합측면에서 이주민을 지역주민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지자체의 각 지역위원회에 다양한 이주민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현재 위원회에서 이주민들이 형식적으로 참가하게 되는 경향이 있음. 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이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이 보장되어야 함.

인간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공정한 분배가 주어지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음. 공정한 분배를 기대하며 힘든 일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꿈을 갖게 되는 것. 그 과정에서 자신이 속한 국가와 지역사회에 소속감과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사회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 봄. 따라서 이주민에 대한 사회통합의 가장 핵심은 이주민들도 기본 출발선에 함께 설수 있도록 공정한 분배와 동등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함.

글로벌 관점에서 본 새 정부 이주정책의 방향

김철효(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

1. 새 정부 이주정책 방향의 실마리

- 국민의힘 대선공약집⁹,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웹사이트 공개자료¹⁰, 대통령당선인 홈페이지 자료¹¹
- 이주정책을 명시적으로 제시한 내용을 찾기 어려움.
- ‘이주의 정치화’ 맥락, ‘국민’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에서 ‘비국민’ 포용정책은 명시화되지 않으나 배제정책은 정치적 수사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음.

2. 국제기구 권고에 따른 대선공약 평가

1) 인종차별·혐오 철폐

다문화가족(p.191)

01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하겠습니다.

- 약속 다문화가족 영·유아와 아동에 대한 교육 및 돌봄 강화
- 양육·돌봄을 위한 조부모 비자발급 개선
- 부모출신 국가의 다문화 자녀 귀국 및 교육 지원
- 다문화청소년 맞춤형 진로지도
- 다문화청년 글로벌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
- 학교폭력 사건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 강화
- 글로벌시대 문화융합을 위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부동산 정상화(p.123)

09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를 규제하여 국민의 거주권을 보호하겠습니다.

- 약속 비거주 외국인 주택거래 허가제를 도입하여 외국인 주택투기 방지

9 국민의힘. 2022.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10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22. (<https://20insu.go.kr/>).

11 윤석열. 2022. ‘약속’,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https://yoonlove.com/promise>).

-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재검토하여 (외국인 부부로 구성된 가족 및 재외동포로 구성된 가족과 같이) 가족 구성원에 한국인이 없어도 모든 가족으로 확대하여 차별 없이 동일한 혜택 제공(CERD 2018년 권고, CERD/C/KOR/CO/17-19, para.24).
- 교육기본법을 개정하여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이 의무교육 보장, 이주아동 입학률 증대를 위한 조치(CRC 2019년 권고, CRC/C/KOR/CO/5-6, para.30).
- 모든 차별 금지 사유에 대한 직접적 및 간접적 인종 차별을 정의하고 금지하는 포괄적 법률의 제정을 조속히 추진(CERD 2018년 권고, CERD/C/KOR/CO/17-19, para.6).
- 여성에 대한 직·간접적 차별, ... 민족·인종·종교·성소수자 여성, 장애 여성, 여성 난민 및 망명신청자, 무국적 여성 및 이주여성, ... 등을 비롯한 취약집단의 여성에 영향을 미치는 교차적 형태의 차별을 모두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CEDAW 2018년 권고, CEDAW/C/KOR/CO/8, para. 13).
- 이주민·난민(무슬림) 편견에 대응, 인종 우월성 전파 및 외국인 혐오 처벌, “불법체류자” 용어의 사용을 철폐·방지하기 위한 법령 검토(CERD 2018년 권고, CERD/C/KOR/CO/17-19, para.8).

2) 이주노동자 권리 보호

중소벤처기업 육성(p.78)

08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약속 향후 5년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유도 ...

공정사회(p.105)

03 취약계층을 위한 노동권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약속 플랫폼종사자 등 모든 노무제공자의 권리 보장
‘청년아르바이트근로자보호법’ 마련
임금체불 등 청년 노동권 침해 시 신속한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노동개혁(p.129)

01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약속 연간 단위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 저축계좌에 적립된 초과근로시간을 장기휴가로 사용
- 연장근로시간 총량규제 방식으로 전환 ...

농산어촌 발전(p.322)

04 농어민들의 경영부담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약속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제도 보완 및 지원

- 농촌인력증개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해 농가에 공급
 - 외국인 근로자 단기취업비자제도 개선, 계절근로자제도 비자 연장
 - 파종기 및 수확기에 한해 외국인 근무처 변경 허용
- 여성 농업경영인 양성 및 지원 강화
- 다문화 이주여성 농업인에 대한 지원 강화

- 이주노동자의 가족 결합 촉진, 사업장 변경 제한 폐지, 체류 가능 기간 연장
- 비국민에 대한 노동조건 차별 철폐, 내국인·외국인 노동자 간의 차별에 대처(CERD 2018년 권고, CERD/C/KOR/CO/17-19, para.10-12).

3) 이주민 복지

촉촉하고 두툼한 복지(p.91)

03 어려울 때 도움 주는 국민안심지원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약속 현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개편

- ... 개인의 생애 특수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국민은 누구나...
- ... 긴급복지 지원 인력을 확대해 국민이 도움이 필요할 때 국가가 신속하게

지원

- 비국민이 국가 사회보장제도에 등록하고 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리도록 보장, 아동의 보편적 출생등록 보장(CESCR 2017년 권고, E/C.12/KOR/CO/4).

4) 이주여성 인신매매·성착취 방지

범죄예방·피해구제

0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모든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약속 신변 보호부터 심리상담, 법률지원, 긴급생계비와 치료비 지원, 그리고 일상으로의 회복까지 '원스톱 피해자 솔루션 센터' 신설.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유지원 제도' 신설.

-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여성·여아 등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보호에 있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포괄적 법률,
- 인신매매 피해여성의 수사기관 협조 의지·능력에 상관 없이 체류자격 보장
- 여성·여아 인신매매, 유괴범죄 유죄판결, 집행유예율 감소

- 인신매매 및 성매매 착취 방지를 위해 피해자·인권중심 접근(CEDAW 2018년 권고, CEDAW/C/KOR/CO/8, para.25).

5) 이주여성 보호 정부 기관

정부혁신

02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부처를 신설하겠습니다.

약속 가족을 보호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별도 부처 신설

- 성평등과 가족문제를 여성가족부 한 부처의 업무로 통합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가정과 사회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차별적 편견을 고착화할 수도 있음을 우려(CEDAW 2018년 권고, CEDAW/C/KOR/CO/8, para.16).
- 정부의 고위급에서 아래에 대한 적절한 자원과 임무 및 이하의 권한을 가진 효과적인 국가 기구, 기관, 절차를 설립/강화
 - (a) 모든 정부 정책이 여성에게 미칠 영향에 대하여 조언
 - (b) 여성이 처한 상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감시
 - (c) 새로운 정책을 고안, 차별철폐를 위한 전략과 조치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조력(CEDAW 일반권고 6호(1988), A/43/38).

3. 제언

이주정책에 관한 국제법적 책무를 다하고 관련 국제기구의 권고를 존중

이주정책에 관한 모범사례를 취합한 국제적 가이드라인(GCM, GCR)을 정책에 적극 수용

